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300
----------	-------

발의연월일 : 2025. 11. 14.

발 의 자 : 이용우·장철민·정준호
손명수·임미애·김남희
박 정·박홍배·민병덕
이학영·복기왕·민홍철
박민규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탄소중립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미활용에너지 발굴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여기서 논의되는 미활용에너지의 대부분은 폐열·수열·하수열 등의 온도차에너지임. 우리나라는 1990년대 후반부터 열에너지 소비가 전기에너지보다 더 큰 구조를 유지해왔음. 따라서 열부분의 탄소감축 없이 탄소중립은 어려운 상황임.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수요는 증가하고 있고, 히트펌프용량은 대형화되고 있어 전세계적으로 여기에서 발생하는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있는 추세임.

일본은 온도차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 지하수, 하천수, 하수 등의 수원을 열에너지의 하나로 인정하고 있고, 유럽이나 미국에

서도 데이터센터에서 필요한 냉난방시설 등에 2035년까지 10%의 하수열을 이용할 계획임.

그러나 우리나라 현행법의 시행령에는 수열에너지가 바이오에너지에 포함되어 있으나, 정작 온도차에너지인 지열·해수열·하천열·하수열은 제외되어 있음.

이에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과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를 추진하기 위해 온도차에너지(지열·해수열·하천열·하수열) 및 공기열에너지를 재생에너지 정의에 포함하고자 함(안 제2조제2호마목 및 바목 신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바목부터 아목까지를 각각 사목부터 자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마. 온도차에너지(지열·해수열·하천열·하수열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 바. 공기열에너지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재생에너지”란 햇빛 · 물 · 지열(地熱) · 강수(降水) · 생물 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 ----- ----- ----- ----- -----.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u>마. 지열에너지</u>	<u>마. 온도차에너지(지열 · 해수 열 · 하천열 · 하수열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u>
 <u><신 설></u>	<u>바. 공기열에너지</u>
<u>바. ~ 안.</u> (생 략)	<u>사. ~ 자.</u> (현행 바목부터 아목까지와 같음)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